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회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함)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란 ‘가족회사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본교와 제4조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2. ‘산학협력협의회’란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교직원, 기업 및 기관 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개별협의회’란 학과별, 전공별, 전문분야별, 지역별, 특수목적별 협의회로 구성하는 협력 조직을 말하며,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의회’의 기초 조직이 된다.
4. ‘협의회 책임교수’란 개별협의회의 관리와 운영을 맡은 본교 교원을 말한다.
5. ‘가족회사 산학협정’이란 본교와 산학협정을 맺지 않은 기업이 본교 가족회사 가입 및 활동을 목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총장(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하는 산학협정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활동’이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현장 지도, 기술 및 경영 자문에 관한 사항
4. 교수 및 연구원의 산업체 현장연수(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대학 보유 기술(특허, 노하우 등) 이전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캡스톤 디자인 등)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학생 취업에 관한 사항
8. 학교 내 기업부설협력연구소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초빙교수의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1.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및 협동 연구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학금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산학명예교수 등 위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양성 강좌 및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 개설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및 연구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약관련 제반 업무

제6조(협약신청 및 승인) ① 본교 가족회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가입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간이과세자 및 예비창업자는 가족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산업체와 가족회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협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신청된 협약은 산학협력단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며,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다. 다만 제9조 제2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다.

제7조(실무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와 협의한다.

제8조(제반경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과 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약당사자) 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대표가 되고, 대학의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과 가족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과의 협약체결 : 총장
2.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산학협력단장

제10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제4조 산학협력활동 내용 중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대학의 협약당사자와 가족회사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산학협력협의회) ① 산학협력협의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각종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협의회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은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③ 기타 산학협력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규정’ 제9조(산학협력협의회)를 따른다.

제12조(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① 대학과 업종별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이하 “개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을 제외한 3개 기업이상의 참여가 필수이며 업종별 가족회사가 중심이 되고 관련 교내·외 연구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개별협의회는 1명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와 3개 이상의 가족회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원 중 1명은 개별협의회의 책임교수가 된다.

- ③ 개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은 소속 가족회사를 3개 이상 확보한 후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개별협의회 구성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운영목적과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④ 개별협의회 책임교수는 매년 3월 중에 개별협의회 운영계획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장은 개별협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협회의 운영비 지원 및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⑥ 개별협의회 책임교수는 연 1회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별협의회 운영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6 제25차 교무위원회>)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및 가족회사산학협약 체결 신청서

| | | | | | | | | |
|----------------|---------------------|--|----------|-------|------------------------|--------|-------------|------|
| 기본 현황 | 기업명 | (일반법인, 외감법인) | | | | 업종코드 | | |
| | | | | | | 업종분류명 | | |
| | 대표자 | 성명 | | | | 직급 | | |
| | | H.P. | | TEL | | E-Mail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설립연월일 | | |
| | 소재지 (주소) | 본사: | | | | TEL) | FAX) | |
| 공장: | | | | | TEL) | FAX) | | |
| 실무 담당자 | 성명 | | 부서명 | | 직위.급 | | | |
| | H.P. | | TEL | | E-Mail | | | |
| 역량 현황 | 상시종업원 (명) | | 매출액(백만원) | | 순이익(백만원) | | 기업부설 연구소 | 유/ 무 |
| | 서울여대와의 산학협력 경력 | 현재 서울여대와 함께 진행 중인 산학협력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 주요 생산 제품 또는 보유 대표기술 | | | |
| | 지적재산권 보유인증/보유 규격 | 지적재산권, 인증, 규격 명 | | | 획득일자 | 해당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희망분야 | ① | | | ⑥ | | | |
| ② | | | | ⑦ | | | | |
| ③ | | | | ⑧ | | | | |
| ④ | | | | ⑨ | | | | |
| ⑤ | | | | ⑩ | | | | |
| 소속 희망 산학협의회 | | | | | | | | |
| 추천교수 | 소속 | 대학(원) | | 학과(부) | 성명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에 동의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 1부.

201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족회사 제00-000호

산 학 협 약 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_____는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학협력협의체(가족회사) 체제를 수립하고 그 발전적 운용 및 실질적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 분야의 교류 및 상호 지원
2. 현장실습 및 취업의 기회 제공
3. 전문인력 교류, 시설물 및 기자재 상호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4.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산학협력 사업 참여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한 산학협력 활동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두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201 년 월 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0 0 0

(별지 제3호 서식)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의회 구성 신청서

| | | | | |
|--|----------------------------|-----|-------|--------------------|
| 협의회 명칭 | 본 협의회는 “_____ 산학협의회”라 칭한다. | | | |
| 구성 목적 | | | | |
| 운영 방향 | | | | |
| 협의회 회원 가족회사 명 단 (3개사 이상) |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본사 주소지 시군구 단위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을 신청합니다. 붙임 : 소속 기업의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div style="text-align: center;">201</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인)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div> | | | | |